###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33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 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계량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중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 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2조(「무역보험법」의 개정)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발명진흥법」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4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고 이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 ④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	⑤
•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
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u>없을 때에는</u> 위촉을 해제할 수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있다.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혅 행 개 정 아 제30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장)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신체·정신상의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회복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기 어려운 신체적 · 정신적 질 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 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있는 경우----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 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 지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로 직 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고 이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 정한 경우